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9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소병훈 · 안태준 · 허성무
권향엽 · 박용갑 · 허영
박정 · 이춘석 · 강준현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재산(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하여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보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서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략)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u><신 설></u>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1. 소득·재산(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신 설>

③ · ④ (생 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
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
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
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
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
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2항제2호-----

--.

1. ~ 8. (현행과 같음)

③ -----

-----제8
조제2항제2호-----

-----.

제10조의2(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하여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보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